

아래 사항은 보험업법 제111조(대주주와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) 제3항, 보험업법시행령제5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-5조에 의한 공시사항입니다.

## 최대주주등을 위한 금전의 대여

보험업법 제111조 제3항 관련 사항

대주주 성명		(주)동부하이텍
신용공여 규모		65,000,000,000
거래조건		대여 시작일 : 2004년 6월 10일 종료일 : 2017년 12월 10일
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금액	채권	-
	주식	-
대주주의 의결권 행사		-
기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 건은 2004년 4월 9일에 기 체결된 계약건에 대한 대출계약조건의 변경에 관한 공시임.</li> <li>- 본 건은 차주인 (주)동부하이텍의 재무구조개선을 전제로 신디케이트론 주간은행인 산업은행이하 대주단의 동의로 이루어진 합의사항임.</li> <li>- 이사회 결의일 : 2007. 12. 27(목)</li> <li>- 대출조건 변경일 : 2007. 12. 28(금)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 변경사항 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상환기간              변경전 : 2009년3월~2012년12월              변경후 : 2014년3월~2017년12월               ⇒ 거치기간 5년연장.</li> <li>2. 금리              변경전 : 기준금리+2.75%              변경후 : 향후 5년간 - 기준금리              이후 4년6개월- 기준금리+9.28%              ※기준금리 :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A등급수익률</li> </ol>

	<p>⇒ Set up 방식 금리 적용으로 IRR은 변동이 없음.</p>
--	---